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공고 제2024 - 65호

## 「2024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활동가 모집

(재)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전남 도내 청년 문화기획자의 사회적 가치 발굴 및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지지하기 위하여 「2024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남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책임감 있고 굳건한 청년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우리 재단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공모사업 지원·선발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의하여 청탁인과 해당 기관에게 과태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지원금 전액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 청년들의 문화적 실험을 지지합니다.」

1

##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 청년 (18세 이상 45세 이하)
  -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준용, 1979. 1. 1. ~ 2006. 12. 31. 출생자 신청 가능
  - ※ 지원 제한 : '2024년도 전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람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를 통한 사업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명	비고
필수	① 공모 신청서(붙임2)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형태 - 전체발급 / 과거 주소 이동 내역 보이게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조회조건 - 전체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붙임2-1)	
	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2-2)	
선택	개인 예술활동 증명 실적	각종 문화기획 경력 등 대표 실적 제출
※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 본만 인정		

- **주요일정 한 눈에 보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정		주요내용
공고	'24. 5. 20.(월) ~ 6. 7.(금), 19일간	재단 누리집 게시
접수	'24. 6. 3.(월) ~ 6. 7.(금) 16:00, 5일간	NCAS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
행정심사	'24. 6. 10.(월)	사업담당자 행정심사 진행(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확인 등)
1차 서류 심의	'24. 6. 11.(화) / 재단 회의실	
1차 선정 결과발표	'24. 6. 11.(화)	재단 누리집 게시 / 40명 내외 선정
교육	'24. 6. 14.(금) ~ 7. 2.(화), 장소 미정 총 3회(1박 2일 1회, 당일 교육 3회) ※ 1박 2일 일정 : 6. 14.(금) ~ 15.(토)	1차 선정자는 필수 참여 ※ 교육 미이수시 2차 인터뷰 심의 참여 불가
2차 인터뷰 심의	'24. 7. 5.(금) 10:00 / 재단 회의실	
최종 선정 결과발표	'24. 7. 8.(월)	재단 누리집 게시 및 NCAS 통보 / 15명 내외 선정
선정 워크숍	'24. 7. 10.(수) 14:00 / 장소 미정	

## 2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4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사회적가치지향 시즌2)

□ 사업목적

- 전남의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결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청년 문화 일거리 제공을 통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

□ 사업기간 : '24. 5. ~ 12.

□ 주제설정

- 전남 또는 22개 시·군 또는 295개 읍·면·동 또는 해당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지역문제
  - \* 김씨 아저씨와 박씨 아저씨의 (눈 먼 땅인) 논 한 마지기를 사이에 두고 생긴 다툼 해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제적으로 이슈인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
  - 생태위기 : 섬, 해양 쓰레기, 해수온도 상승 등
  - 지역소멸 : 저출산, 초고령화, 고독사, 청년유출 등
- 기타 : 이웃 간 소통단절 해결,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 예방방안 마련, 귀촌인의 지역 적응 도모 등

□ 사업내용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생태위기, 지역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가치 지향 및 지역문제 해결을 주제로 문화적 실험과 도전 지원을 위하여 프로젝트 지원금과 활동비 지급

★ 주요 키워드 : 청년, 문화 일거리, 문화적 실험, 도전과지지

## □ 지원내용

- **프로젝트 지원금** : 연간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3백만 원 지원**
  - 재료비, 발간·편집비, 영상 제작비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식비 및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
- **월 활동비** :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청년 활동비 **월 160만원 지원**
  - (지원내역) 1인 160만 원×5개월(7월 중순~12월 중순) = 연간 총 8백만 원 지원
  - (지원조건)
    - 월 10일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 활동에 관한 활동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을 어기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활동비 미지급
    - 7월 선정워크숍, 월 1회 월례 워크숍, 12월 성과공유 워크숍 등 이외 재단에서 요구하는 행사 참여 필수

## 3

## 공모 세부내용

□ 활동기간 : '24. 7. ~ 12. (5개월)

□ 사업대상

- ◆ 오롯이 '사.가.지. 시즌2'에 집중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굳건한 청년
- ◆ 획기적이고 발칙한 상상력을 가진 'N'형 청년

-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 청년 (18세 이상 45세 이하)
- 선정인원 : 1차 40명 내외 → **최종 15명 내외 선발**
- 모집분야

구 분	프로젝트 활동가	기록가(깍두기)
역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청년	사업 운영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 후 매주 1회 업로드 할 재미청년
지원내용	활동비, 프로젝트 비용	활동비
선정인원	10~15명	2~3명

## 4

## 선정 기준

### □ 심의기준

- (전 반)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 (기여도) 사업 목적·기획 의도의 적절성, 지역 여건 및 현안, 특성 반영
- (프로젝트 완성도) 기대효과,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4. 6. 11.(화), 40명 내외 선정
  - 결과발표 : ’24. 6. 11.(화) 재단 누리집 공고
- **교육** : ’24. 6. 14.(금) ~ 7. 2.(화), 약 3주간 ※ 일정 변동 가능
  - 총 4회 참여 (1박 2일 워크숍 1회, 다지기 2회, 네트워크 파티 1회)

구분	일자	장소	주요내용
1박2일 워크숍	’24. 6. 14.(금) ~ 15.(토)	미정	공공의 영역의 문화기획 사례 소개, 기획서 작성 방법, 프로젝트 구체화
다지기(2회)	’24. 6. 19.(수), 27.(목)	서부권	개인 프로젝트 구체화 및 기획서 피드백
	’24. 6. 20.(목), 28.(금)	동부권	
네트워크 파티	’24. 7. 2.(화)	미정	전남 청년들과 함께하는 해커톤 대회

※ ‘1차 선정자 대상으로 진행 / 미 이수시 2차 인터뷰 심의 참여 불가

- **2차 인터뷰 심의** : ’24. 7. 5.(금), 15명 내외 선정
  - 결과발표 : ’24. 7. 8.(월) 재단 누리집 공고 및 NCAS 통보

### □ 최종선정 : 15명 내외

## 5

## 문의처

-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 ☎ 061-280-5828

※ 문의시간 : 평일 8:00 ~ 17:00

지원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 청년 (18세 이상 45세 이하) (주민등록 초본으로 거주주소 확인 예정-활동가능여부 판단용)</li> <li>• 개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li> </ul>
지원제한· 불가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b>개인 공통 지원제한·불가 사항</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21~'23)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지원·선정 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와 재단이 정하는 기간 중 사업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함</li> </ul> </li> <li>◆ 최근 3년('21~'23) 지원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2024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정산보고를 하였으나 재단에서 보완요청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li> </ul> </li> <li>◆ 최근 3년('21~'23) 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2024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경우</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개인 지원제한·불가 사항</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li> <li>◆ '2024년도 전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li> </ul>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li> </ul> </li> </ul>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 신청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신청자격과 활동 경력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li> <li>◆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li> <li>◆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li> <li>◆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li> <li>◆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li> <li>◆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li> </ul>



<p>사업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자율결정)</li> <li>◆ 신청자격 조건, 필수 제출서류 확인</li> <li>◆ 지원 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li> <li>◆ 허위사실 기재 시,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li> <li>◆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필수</li> <li>※ 1개월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신청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신청이 제한됨</li> </ul>
<p>예산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 후 재단담당자 및 컨설팅위원과 협의 하에 사업방향 변경 가능</li> <li>◆ 예산집행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발간·편집비, 영상제작비 등 편성</li> <li>• 식비 및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 편성 불가</li> <li>• 개인 사례금으로 집행 시 환수 조치</li> </ul> </li> </ul>
<p>사업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는 교육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그 기간 중 사업 방향 또는 주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재단이 추진하는 컨설팅, 워크숍 등 행사 참석 필수</li> <li>◆ 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 사업비 카드 개설 필수</li> <li>◆ 보조금 수령 후 사업수행</li> <li>◆ 사업 홍보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li> <li>◆ 사업 회계연도 마감일(2024. 12. 31.)을 반드시 준수</li> <li>◆ 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 사업임을 명시</li> <li>※ 주관/후원 : (재)전라남도문화재단</li> </ul>
<p>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정산보고 제출 및 관련 서류 5년간 보관</li> <li>※ 정산보고를 사업수행 종료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차기 년도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li> <li>◆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재단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li> </ul>

### 참고3

## 지출 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2024년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101	인건비		공통
	01 보수	1.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평균 임금산정, 결원율을 참고하여 계상 2.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기본연봉액을 총액으로 계상 3. 보수규정 등에 의한 상여수당 등 제수당 가.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중 제수당에 해당되는 경비 포함 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 포함	공통
	02 기타직보수	1.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계약직근로자의 보수, 상여금, 법정수당	공통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공통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정원의외 업무관련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상여금 및 법정수당	공통
201	일반운영비	1. 일반운영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본적 지출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2.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 항목은 자본적 지출 해당과목에 계상	공통
	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1)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2)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3) 기타수용비 : 범용 S/W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나. 필기구, 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1)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광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비목에 계상 2)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야.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1-01(시설비)에 계상 자. 차관물자용역대 1)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2)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 등 용역대 및 해외훈련비 차. 기타 1)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2) 소송료(등기료는 해당자산에 포함) 3)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 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4)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5)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6) 물품의 운송대(자산취득 시는 해당자산에 포함)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p>7)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p> <p>8)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 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p> <p>9)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 통역비</p> <p>10)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적일때에는 포함하고 측량수료의 경우 자산취득 시 해당자산에 포함)</p> <p>11)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전자결제대행수수료 등</p> <p>12)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p> <p>13)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p> <p>2. 위원회 등 운영수당</p> <p>가. 위원회 참석수당</p> <p>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p> <p>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p> <p>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계상 가능</p> <p>나. 심사수당</p> <p>1)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p> <p>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 심사 등</p> <p>2)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p> <p>3)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다. 일·숙직수당</p> <p>1)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p> <p>2)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p> <p>라. 시험관리비</p> <p>1)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p> <p>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 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 편집 및 편찬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음</p> <p>마. 이사회 참석수당</p> <p>1)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비</p> <p>3. 임차료</p> <p>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p> <p>나.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p> <p>1)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p> <p>2)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p> <p>다.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p> <p>라. 버스, 승용차 등 차량임차료</p> <p>1)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p> <p>마.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p>	
02 공공운영비		<p>1. 공공요금 및 제세</p> <p>가. 우편물 발송대</p> <p>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p> <p>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p> <p>라.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p> <p>마. 자동차세, 오토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p> <p>바. 무선 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p> <p>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p> <p>아. 기 타</p> <p>1)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공과금</p> <p>2) 보험(공제) 계약에 의한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p>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3)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연료비 가. 냉·난방시설(부속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부대경비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3. 차량선박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나. 선박유지비(기타 수상운반구 포함)	
	0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기관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공통
	14 회의비	1.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개최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 소요되는 비용(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 회의비 집행 불가) 2. 노사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은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내에서 집행	공통
	15 복리후생비	1.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의거편성 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3.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시행경비(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4.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 5. 침구류 구입 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장비 구입비 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보육비 지원 9.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공통
	16 광고선전비	1.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공통
	17 판매촉진비	1. 인센티브 등 판매촉진을 위한 기타 제 비용 ※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	공통
202 여비			공통
	01 국내여비	1. 출연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공통
	02 월액여비	1. 출연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월액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 출연기관별로 대상 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공통
	03 국외업무여비	1. 출연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국외출장여비)	공통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공통

목	세목	과 목 해 소	비고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10 행사실비보상금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2.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공통
	13 기타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2. 법령·조례(기관의 정관, 규정)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 5.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6. 재해복구 민간인 식비, 장비유류대, 사고시 치료비 7. 민간인 국외여비 가. 출연기관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 8. 외빈초청여비 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중 여비. 단,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부대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 1)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2)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나. 예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함	공통